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6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애리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7.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10. 접수 제746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D은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6. 6. 2. 카드론 대출을 받고 2016. 11.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2) 원고는 D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412)을 신청하여 2017. 1. 11. D은 원고에게 ‘53,961,295원 및 그 중 5,350,77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47,415,23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 3)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20. 3. 30. 현재 신용카드대금 7,672,056원, 현금서비스 4,900,000원, 카드론 대출금 및 이자 42,950,489원, 수수료 100,482원, 연체료 38,848,798원, 법적 조치비용 18,630원, 소계 94,490,455원이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 1) D은 2016. 11.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위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2016. 4. 15. 채권최고액 247,5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 주식회사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D과 피고의 이혼

- 1) D과 피고는 1994. 9.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아들 F(G생)과 딸 H(I생)가 있었다.
- 2) D과 피고는 2016. 7. 6.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6. 11. 10.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4호증,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인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원고는, D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재산분할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3)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2016. 2. 22.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분양대금 37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3. 30.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15. 61,000,000원과 D 명의로 E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225,000,000원, D으로부터 받은 24,000,000원, 소계 310,000,000원을 지급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D이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굳이 D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가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6. 4. 19. 피고는 D으로부터 ‘충실한 가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륜시 친권과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기까지 하는 등 D과 피고가 이혼을 하는 데 D의 귀책사유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 D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D와 2016. 7. 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조정을 신청하여 2016. 11. 7.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주식회사 E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추후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 이외에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이 협의이혼할 당시 자녀들 중 아들은 만 21세로 대학교 1학년 휴학 중 군복무 중이었고, 딸은 만 19세 4개월 남짓으로 대학입시 재수를 하던 중이었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렀기는 하나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양육을 요하는 형편이었고 이러한 양육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 지 목 록

1.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55.6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172㎡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173.2㎡

대지권의 종류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45.2분의 34.52

———— 이 상 ————

관할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